



## 9월 26일(화) 15:00 (브리핑 시작) 이후 사용

비고

# 공동배포 : 과기정통부, 법무부, 행안부, 여가부, 방통위, 경찰청  
# 브리핑 : 9.26(화) 15:00, 정부서울청사, 국무조정실장

담당

<총괄>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	과장 김진남, 서기관 문경식 (044-200-2468, 2506)
교육부	과장 김우정, 사무관 정민재 (044-203-6539, 6898)
과기정통부	과장 정영길, 과장 허원석 (02-2110-2950, 1981)
법무부	과장 박성민, 검사 신희영 (02-2110-3307, 3695)
국방부	과장 허수연, 중령 조은경 (02-748-5170)
행안부	과장 박종현, 과장 김상진 (02-2100-4130, 4260)
문체부	과장 강수상, 사무관 정현욱 (044-203-2911, 2913)
복지부	과장 임혜성, 사무관 전가영 (044-2022-2840, 2845)
여가부	과장 이남훈, 사무관 장현경 (02-2100-6381, 6389)
국토부	과장 박건수, 사무관 한기준 (044-201-4600)
인사처	과장 정지만, 사무관 한인희 (044-201-8440, 8433)
방통위	팀장 박명진, 사무관 권만섭 (02-2110-1560, 1566)
관세청	과장 김윤식, 사무관 양을수 (042-481-3207, 7841)
경찰청	과장 신윤균, 경위 박예리 (02-3150-0911)
방심위	차장 김창균, 팀장 한명호 (02-3219-5122, 5120)

##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
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-

- 오늘(9.26) 오전,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「디지털 성범죄(몰래 카메라\* 등) 피해 방지 종합대책」을 보고했습니다.

\*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서 규정한 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’는 일명 ‘몰카’로 약칭되고 있는데, 同 용어가 ‘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’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지적이 있어 향후 ‘몰카’ 대신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‘불법촬영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임

□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\*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

\* ('12) 2,400건 → ('13) 4,823건 → ('14) 6,623건 → ('15) 7,623건 → ('16) 5,185건

-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, 여성들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,
-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,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,
-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

□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(5회), 민간전문가 간담회(2회), 공개 토론회(9.20), 당정협의(9.26) 등을 통해 피해자, 관련업체와 판매자, 민간전문가,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,

-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.

□ 이번 종합대책은 “디지털 성범죄 Zero, 국민 안심사회 구현”을 목표로, △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·적발 강화 △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△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 강화 △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.

□ 각 단계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 1. 변형 카메라 판매·촬영 단계

□ 누구나 인터넷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·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, 현행법상 수입·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.

-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\*의 수입·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(구매시 개인정보 제공, 양수·양도시 신고 등)하고,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(DB)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

\*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

□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용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·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

- 이에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고,
-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·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며,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

□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(Internet Protocol)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·해킹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

- 이는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고,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.
- 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, 홍보를 통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해킹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 차단하겠습니다.

## 2. 불법촬영물 유포·신고 단계

-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.
-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·차단하는 FAST TRACK(정보통신망법 개정, '17.12)을 '18년부터 시행하고,
-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先차단\*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(종전 10.8일 소요)할 예정입니다.
- \*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긴급조치 시행
-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·삭제에 소극적이었으며, 불법촬영물의 유포·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헤비 업로더 및 웹하드·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했습니다.
-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·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,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(전기통신사업법 개정, '17.12)할 계획입니다.

- 또한,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·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
- 현재 인터넷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근본적으로 검출·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합니다.
  - 정부는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, 우선 '18년까지 이미지·오디오·동영상의 유해성 분석·검출 기술을 개발하고, '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.
  -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\* 기술을 '19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.
    - \*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수치화하여 DNA를 추출하고, 확보된 DNA와 비교하여 원본 저작물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
- 아울러, 불법촬영물의 빠른 유포 방지와 국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,
  - 대화형 메신저,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'신고' 버튼을 설치하여 재유포를 차단하는 한편,
    - 불법영상물 신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삭제·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
  - 이와 함께 시민단체·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 신고 요원으로 참여,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
### 3. 디지털 성범죄 단속·수사 단계

□ 화장실·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·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, 전문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·대응능력도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.

□ 먼저,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\*를 추가 보급하여 지자체·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.

\*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(전파탐지형 + 렌즈탐지형), '18년 288대 추가 보급(경찰청) 및 탐지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(과기정통부)

○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(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,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, '17.12)하고,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'영업장 폐쇄' 처분조치(공중위생법 개정, '18.6)를 할 계획입니다.

○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·철도역사·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개소(930개역)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- 이와 함께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·역무원·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,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.

□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\*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\* ①사이트 운영자·광고업자, ②웹하드·헤비업로더, ③음란 인터넷방송 업자

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을 도출하여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,
- 경찰청-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□ 아울러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·운영함으로써 신고·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

-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,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.

#### 4.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

□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('11.1월~'16.4월) 분석결과에 따르면, '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' 처벌은 징역형이 5.3%, 벌금형 71.9%, '음란물 유포죄' 처벌은 징역형 5.8%, 벌금형 64.4%으로, 징역형이 5%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,

- 불법촬영물 2차 유포·확산이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처벌조건이 미비하여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
- 먼저,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'징역형' 만으로 처벌(벌금형 불가)토록 했습니다.
  -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습니다.
  -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'7년 이하 징역형'으로만 처벌토록 했습니다.
  -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(징역 5년 이하, 벌금 1천만원 이하)토록 했습니다.
    - \* (현행) 동의(징역 3년, 벌금 500만원), 비동의(징역 5년 이하, 벌금 1천만원 이하)

-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, 목적 외 용도 이용,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(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, '18.6)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-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, △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, △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,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,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토록 할 예정입니다.



- 또한,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,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·몰수할 예정입니다.
- 국가공무원, 교육공무원,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(파면, 해임 처분) 토록 할 계획입니다.

## 5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

- 그동안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, 심리·법률 상담, 사후 관리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,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\*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

\* 불법영상물 삭제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원씩 6개월간 지급

- 정부는 “여성긴급전화 1366”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 (gateway)로 운영하고, 신고 즉시 △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, △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, △ 전문상담,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,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\* 경찰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은 '18년부터 시행

- 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~5일로 단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 (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, '17.12)하고,
- 법률구조공단,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,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- 또한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,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(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, '17.12)할 계획입니다.

## 6. 디지털 성폭력 예방·교육 단계

- 아직까지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'중대한 범죄영상'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,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.
-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(여가부·법무부·방통위·경찰청 등),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「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」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
-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,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'범죄 영상'이라는 인식을 제고토록 했습니다.
  - 아울러 '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, 유포하지 않기'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행정기관·공공기관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·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하고,
  -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.
- 앞으로, 법률 제·개정(제정 1, 개정 7)이 필요하거나,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, 「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」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※ 붙임 :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

붙임

# 디지털 성범죄(몰래카메라 등) 피해 방지 종합대책

2017. 9. 26.



관계부처 합동

# 순서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현황 및 문제점 .....	2
III. 추진방향 및 과제 .....	5
IV. 단계별 개선방안 .....	6
1. 변형카메라 판매·촬영 .....	6
2. 불법영상물 유포·신고 .....	8
3. 디지털 성범죄 단속·수사 .....	10
4.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.....	12
5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.....	14
6. 디지털 성범죄 예방·교육 .....	15
V. 향후 추진계획 .....	17

## 1. 추진 배경

- 최근 4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 추세
    - \* 디지털성범죄(건) : ('12)2,400 → ('13)4,823 → ('14)6,623 → ('15)7,623 → ('16)5,185
  - 몰카 노출 위험 증가, 불법영상물의 빠른 유포 등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예방과 처벌,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·제도는 미비
- ⇒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·추진 필요
- ※ VIP, “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”(8.8)

## 2. 추진 경과

- 관계부처 회의(8.30/9.6/9.11/9.12/9.25 5회), 전문가 간담회(9.4/9.7 2회),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(9.14), 공개토론회(9.20), 당정협의(9.26)를 통해 의견수렴

## 3. 디지털 성범죄 문제점

단계	문 제 점
판매·촬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소형·변형카메라 수입·판매 관련 무규제 → 이력관리 불가능</li> <li>▪ 몰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·단속의 어려움</li> </ul>
유포·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불법영상물 신속한 검출·차단 위한 기술적·제도적 방안 부재</li> <li>▪ 영리목적 유포자(웹하드 업체 등)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</li> </ul>
단속·수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디지털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수사기법·대응력 부족</li> <li>▪ 공중화장실 등 몰카 단속 위한 탐지기 등 인프라 미비</li> </ul>
가해자 처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 유포자 실질적인 처벌 수준 경미(벌금형 등)</li> <li>▪ 보복성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요건 미비</li> </ul>
피해자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피해사실 신고-상담-사후관리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체계적 지원 부재</li> <li>▪ 피해자가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</li> </ul>
예방·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몰카 영상물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피해방지 위한 홍보·교육 미흡</li> </ul>

## 4. 추진방향 및 과제

목  
표

“디지털 성범죄 Zero”, 국민 안심사회 구현

전  
략

- ◆ 변형카메라 엄격한 관리와 불법영상 탐지·적발 강화
- ◆ 불법영상물 철저한 유포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
- ◆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신적·경제적 고통 최소화
- ◆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

단  
계

판매·  
촬영

유포·  
신고

단속·  
수사

가해자  
처벌

피해자  
지원

예방·  
교육

추  
진  
과  
제

- 변형 영상 촬영기기 사전규제
- 스마트폰 등 촬영시 '무음앱' 이용 제한
- IP 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
- 불법 영상 촬영기기 수입심사·검사 강화

-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·차단
-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
- AI 활용 유포탐지·차단기술 개발·적용
- 불법영상물 신고 활성화

- 다중이용 시설 불법 촬영 피해 예방 조치
- 디지털 성범죄 단속강화
- 디지털 성범죄 수사전담팀 지정운영

- 불법영상물 유포자 등 가해자 처벌 강화
- 경제적 이득 몰수·추징
-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
- 해외서버 불법사이트 단속 및 처벌

-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
-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지원
-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

-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
- 디지털 성범죄 국민 인식 개선
-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
-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

## 5. 단계별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

○ 판매·촬영부터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**6단계 22개 과제 개선**

### ① **변형 카메라 판매·촬영**(4개 과제)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① 변형카메라 수입·판매업 등록제 도입	무규제 자율판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변형카메라 <b>수입·판매업 등록제</b> 도입 및 이력정보시스템(DB) 구축</li> </ul>	공동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입 (과기부, 행안부, 경찰청, '18.6)
- 개인영상정보 보호	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무를 목적으로 촬영·유통되는 <b>개인영상 정보 보호의무 부과</b></li> </ul>	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(행안부, '18.6)
② 스마트폰 등 촬영시 '무음앱' 이용 제한	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무목적 스마트폰 촬영시 <b>불빛·소리 등으로 촬영사실 표시</b></li> <li><b>드론(업무용) 촬영시 사전고지 의무화</b></li> </ul>	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(행안부, '18.6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촬영 무음앱 다운 로드시, 타인 <b>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</b> 위험성 안내(고지)</li> </ul>	스마트폰 앱 설명자료 고지 (방통위, '17.12)
③ IP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	제조사 비밀번호 변경 없이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P카메라 등 해킹 대응을 위한 <b>초기 비밀번호 변경 안내</b></li> <li><b>단말기별 다른 비밀번호 설정</b> 등 보안조치 강화</li> </ul>	후속조치 (과기부, '17.10)
④ 불법 영상 촬영기기 수입 심사·검사 강화	수입통관, 국내유통 단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카메라 관련 물품의 <b>수입심사·검사 강화</b></li> </ul>	후속조치 (경찰청·관세청, 상시)



② **불법영상물 유포·신고**(4개 과제)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①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·차단	10.8일 소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AST TRACK 마련 (<b>수사기관 요청시 즉시 차단·삭제</b>)</li> </ul>	정보통신망법 개정 (방통위, '17.12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피해자 요청시 <b>선차단(자율규제) 조치 후 긴급심의</b> (2~3일소요)</li> </ul>	긴급심의제도 활성화 (방통위, 방심위, '17.10)
-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삭제·차단	사업자별 자율규제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음란정보 유통 사실 인지시 <b>삭제·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</b></li> </ul>	전기통신사업법 개정 (방통위, '17.12)
②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	불법영상정보 웹하드사업자만 공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불법영상정보 공유대상 사업자 확대</b> (인터넷사업자 등)</li> </ul>	공유조치 (방통위·방심위·여가부·경찰청, '17.10)
	방통위 자체 모니터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, 영상물 업·다운로드시 <b>위험성 경고 팝업창 신설</b></li> </ul> <p>※ 웹하드 53개사업자 65개 사이트 운영중</p>	가이드라인 마련 (방통위, '17.12)
③ AI 등 활용, 유포 탐지·차단 기술 개발·적용	해시값 이용 (재편집시 탐지 불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오디오·동영상 <b>유해성 분석·검출 요소 기술 개발</b></li> </ul>	기술개발 (과기부, '18.12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AI·빅데이터 활용 <b>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</b></li> </ul>	기술개발 (과기부, '19.12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편집·변형된 불법 영상물의 유통 원천적 차단을 위한 <b>DNA 필터링 기술 적용</b></li> </ul>	DNA 필터링 기술 적용 (방통위, '19.1)
④ 불법영상물 신고 활성화	자체모니터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화형 메신저,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재유포 차단 <b>'신고' 버튼 개설</b></li> </ul>	'신고' 버튼 개설 (방통위, '17.12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민단체 등 <b>신고요원 확대</b></li> </ul>	신고요원 확대 (여가부, '17.12)

③ 디지털 성범죄 단속·수사(3개 과제)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피해 예방 조치	자체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전문 탐지장비 추가 보급</b> 및 몰카 점검 서비스 제공 ※ 경찰청, 탐지장비 186대 보유</li> </ul>	후속조치 (경찰청, '18.1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중화장실 등) <b>몰카 설치 금지 의무화</b> 및 경찰·지자체 정기적 확인</li> </ul>	공중화장실법 개정 (행안부, '17.12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숙박시설) <b>숙박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시 '영업장 폐쇄'</b></li> </ul>	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(복지부, '18.6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지하철 등) <b>몰래 카메라 설치 취약 역사(930개역) 일제 점검(9.8~9.30)</b></li> </ul>	후속조치 (국토부, 즉시)
②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	수시 단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국내)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(사이트운영자, 웹하드,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) <b>단속 강화</b></li> <li>• (해외) 음란물 유포 범죄 <b>국제공조 강화</b> (미 국토안보수사청 등)</li> </ul>	지속 단속 (경찰청, 수시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<b>몰카 우범지역 도출</b>, 순찰 강화</li> </ul>	우범지역 도출 (과기부, 경찰청, '18.12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찰청-방심위간 <b>불법정보 공조시스템</b> 구축</li> </ul>	공조시스템 구축 등 (경찰청, 방심위, '18.6)
③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	여성청소년과, 사이버수사팀 별도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성 확보 및 신속 수사 위해 신고·수사 체계 일원화 →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 지정 운영</li> </ul>	후속조치 (경찰청, '17.10)

#### ④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(4개 과제)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<b>① 가해자 처벌 강화</b>			
- 연인간 복수 목적 등으로 특정 부위·행위가 촬영된 영상물 유포	다른 사람 신체 촬영·유포죄 (징역 3~5년, 벌금 500만원 ~ 1천만원)	• 처벌조항 신설 <b>(징역형으로만 처벌) (벌금 X)</b>	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 (법무부, '17.12)
-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	처벌 불가 (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)	• 처벌조항 신설 <b>(징역형 또는 벌금)</b>	
-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정보 통신망 이용 유포	7년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	• 처벌 강화 <b>(징역형으로만 처벌) (벌금 X)</b>	
<b>② 경제적 이득 몰수·추징</b>	없음	• 개인영상 정보의 제3자 제공, 유출시 <b>취득한 금품·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</b>	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(행안부, '18.6)
- 상습 몰카 사범 구속 수사 및 카메라저장매체 몰수 등 엄정 대응	사건처리기준을 경미하게 적용	• <b>상습적인 몰카 촬영 유포 사범 원칙적 구속 수사</b> (성범죄 기록물 보관 <b>저장매체, 기기 등 압수·몰수</b> )	후속조치 (법무부·경찰청, 즉시)
<b>③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</b>	기관별 징계	• 공무원, 교사, 군인 등 <b>몰카 관련 성범죄시 공직 배제</b> (파면·해임)	처리지침 시행 (인사처, '17.10) 징계유형 신설 (국방부, '17.10)
<b>④ 해외서버 불법 사이트 단속 및 처벌</b>	해외사이트 운영자 단속·처벌 미흡	• <b>해외불법사이트</b> 운영 금지 및 <b>운영자 신원 확인</b> → 다각적 방법으로 검거 조치	해외서버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(법무부, 상시)

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(3개 과제)

과제명	현 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①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	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	• 긴급전화 1366 등 통해 채증, 삭제, 사후 모니터링, 의료비, 법률 상담 등 <b>종합서비스 제공</b>	보호체계 구축 (여가부·방심위·경찰청, '17.10월)
②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	없음	• <b>정신적 피해 입원비, 생계비</b> 등 지원 확대 - 입원기간 요건 현행 1주일→3~5일로 단축 등	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(법무부, '17.12) 및 생계비 등 지원 (법무부, 즉시)
③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	없음	• 정부가 <b>先 삭제비용 지급 후</b> 가해자에게 <b>後 삭제비용 부과</b>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 (여가부, '17.12)

⑥ 디지털 성범죄 예방·교육(4개 과제)

과제명	현 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	없음	• 부처, 관련업계, 시민 단체로 <b>협의체 구성·운영</b> (실태점검, 개선방안 논의 등)	협의체 구성·운영 (여가부, '17.10)
② 디지털 성범죄 국민 인식 개선	없음	• 불법영상 촬영·유포는 <b>신상정보공개 등 중대 범죄</b> , 가해자 검거시 보상금 지급 등 홍보	홍보 콘텐츠 제작·홍보 (여가부·문체부·방통위, '17.10)
③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	성폭력 예방교육	• 행정기관·공공기관 대상 불법영상 촬영·유포의 <b>위험성·처벌법규 교육 추가</b>	교육 확대 조치 (여가부·각급기관, '17.10월~)
④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	성폭력 예방교육	• 불법영상 촬영·유포는 <b>성범죄 대상</b> 임을 교육	성범죄 교육 확대 (교육부, '17.10월~)

## 6. 향후 추진계획

- 「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」 당정간 후속조치 추가협의(9.27)
  - 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’ 등 관련 법률(7개)의 조속한 통과
  - 국회 심의과정에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확충 등 예산 반영
- 「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」 분기별 점검(국무조정실)
  -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시행
  -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및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
- 「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(주관 : 여성가족부)」를 통해 대책 지속 보완(관계부처)

◆ 이번 「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」은 “디지털 성범죄 Zero, 국민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점”으로 추진

## I

## 추진 배경

□ 최근 4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 추세

○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'12년 대비 '16년 2배 이상 증가

구분 (건)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
수사	2,400	4,823	6,623	7,623	5,185
검거	2,042	4,380	6,361	7,432	4,904

○ 개인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도 '12년 대비 '16년에 6배 이상 증가

구분 (건)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
심의	1,130	2,259	1,807	3,768	7,356
시정요구	1,044	1,949	1,665	3,636	7,325

□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상황

○ 스마트폰 보급, 카메라 소형화·고성능화로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되어, 공공장소·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몰카에 노출 가능성 증가

○ 불법영상물이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,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

□ 범죄 심각성에 비해 예방과 처벌,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·제도 미비

○ 촬영 장비·수법 등이 다양화되면서 몰카 단속·적발의 어려움 증가

○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'숨방망이 처벌' 논란 및 불법영상 2차 유포 등 다양한 가해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

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강력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·추진 필요

※ VIP, "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"(8.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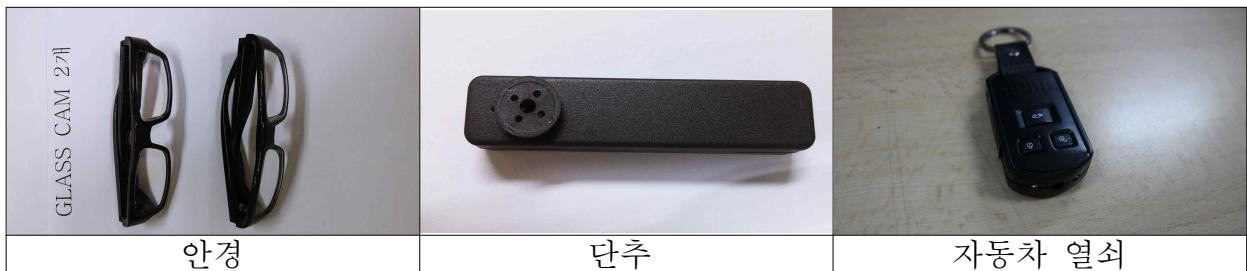
## II

## 현황 및 문제점

### 1. 디지털 성범죄(몰래카메라) 현황

#### ① 몰카 형태 및 기능

- 단추·안경·볼펜·모자·라이터·자동차 열쇠·USB·화재경보기·보조배터리·휴대폰 케이스·시계·드론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 및 소형화
- 초고화질·적외선 촬영·소리 감지·무음 촬영 등 촬영 기기 고성능화



#### ② 촬영 장소

- 과거 모텔·개인 숙소 등 사적 공간에 집중되었던 촬영 장소가 공중 화장실·지하철·계단·샤워실·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

#### ③ 유통 경로

- 몰카로 촬영한 불법영상을 영리 등 목적으로 웹하드·성인사이트·SNS 등에 유포, 불특정 다수에 빠른 속도로 확산
- 의도적인 유포 이외에도 휴대폰 분실 및 도난, IoT 기기 해킹 등에 따른 개인 영상물의 의도하지 않은 유포·확산 발생

#### ④ 가해자 유형

- 남성이 여성을 촬영하는 전형적인 몰카 범죄 이외에도, 샤워실에서 여성이 같은 여성 대상 몰카 촬영(15.8월) 등 가해자 다양화
- 고도의 윤리·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군(판사, 교사)이 몰카 가해자로 밝혀져 사회 이슈화(17.7, 8월)

#### ⑤ 몰카 범죄 형태

-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개인 직접 촬영이 대다수(85.5%)이며, 순수 배포행위(9.4%),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(5.1%) 순

## 2. 디지털 성범죄 문제점

### ① 판매 및 촬영

- 일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인터넷·전자상가 등을 통해 변형·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 가능
- 변형·위장 카메라를 활용해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, 현행법상 수입·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이력관리가 불가능
- 스마트폰 무음앱 등을 이용한 촬영음 무력화로 몰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·단속의 어려움

### ② 유포 및 신고

-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히 검출·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·제도적 방안 부재
- 불법영상물 유포·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헤비 업로더 및 웹하드·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
- 불법영상물 신고 방법, 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자 및 일반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데 한계

### ③ 단속 및 수사

- 성인지 감수성, 전문성이 낮은 수사관과의 접촉을 통해 2차 피해 후 신고를 포기하는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·대응능력 부족
- 피해 인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사를 위한 채증과정에서 피해자 심리적·경제적 고통 가중
- 공중화장실·탈의실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몰카 탐지기 등 인프라 미비



#### 4 가해자 처벌

-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 수준 경미

\* 서울 지역 법원의 1심 판결('11.1월~'16.4월) 분석결과

- ① (카메라등이용촬영죄, 총 1,532건) 징역형 82건(5.32%), 벌금형 1,109건(71.9%), 집행유예 226건(14.6%), 선고유예 115건(7.5%)
- ② (음란물유포죄, 총 207건) 징역형 13건(5.86%), 벌금형 143건(64.4%), 집행유예 36건(16.22%), 선고유예 15건(6.76%)

- 몰카 촬영물 2차 유포·확산,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처벌 규정

\* 현재 몰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증거확보(피해자 특정+특정부위 채증)가 어려워,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

#### 5 피해자 지원

-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, 심리·법률 상담, 사후 관리까지 몰카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 부재
- 몰카 피해자가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

#### 6 예방 및 교육

- 아직까지 몰카 영상물을 중대한 범죄 기록물이 아니라 단순 음란 동영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 만연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, 피해자 지원 방법 등에 대한 홍보·교육 미흡

Ⅲ

추진방향 및 과제

목표

“디지털 성범죄 Zero”, 국민 안심사회 구현

전략

- ◆ 변형카메라 엄격한 관리와 불법영상 탐지·적발 강화
- ◆ 불법영상물 철저한 유포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
- ◆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신적·경제적 고통 최소화
- ◆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

단계

판매·촬영

유포·신고

단속·수사

가해자 처벌

피해자 지원

예방·교육

추진과제

▪ 변형 영상 촬영기기 사전규제

▪ 스마트폰 등 촬영시 '무음앱' 이용 제한

▪ IP 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

▪ 불법 영상 촬영기기 수입심사·검사 강화

▪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·차단

▪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

▪ AI 활용 유포탐지·차단기술 개발·적용

▪ 불법 영상물 신고 활성화

▪ 다중이용 시설 불법 촬영 피해 예방 조치

▪ 디지털 성범죄 단속강화

▪ 디지털 성범죄 수사전담팀 지정운영

▪ 불법영상물 유포자 등 가해자 처벌 강화

▪ 경제적 이득 몰수·추징

▪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

▪ 해외서버 불법사이트 단속 및 처벌

▪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

▪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지원

▪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

▪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

▪ 디지털 성범죄 국민 인식 개선

▪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

▪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

## 1. 변형 카메라 판매·촬영

## ① 변형 영상촬영기기 사전규제

- (변형카메라 수입·판매업 등록제 도입) 변형카메라\* 수입·판매업 등록제(구매시 개인정보 제공, 양수·양도시 신고 등) 도입 및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(DB) 구축

\*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

- (개인영상정보 보호) 업무를 목적으로 고정형\* 및 이동형 영상기기\*\*에 의해 촬영·유통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의무 부과(위반시 벌칙 부과)

\* CCTV, 네트워크 카메라 등 \*\* 신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및 드론 등

⇒ 공동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입(과기정통부·행안부·경찰청, '18.6월)

「개인영상정보 보호법」 제정(행안부, '18.6월)

## ② 스마트폰 등 촬영시 '무음앱' 이용 제한

- (촬영사실 표시)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 촬영시 불빛·소리\* 등으로 촬영 사실 표시 및 드론에 의한 촬영시 사전고지 의무화\*\*

\* 현행 스마트폰 기본 탑재 카메라 '촬영음'은 「휴대폰 카메라 촬영음」(정보통신 단체표준)에 따라 '04. 6. 1. 이후 출고 제품부터 적용토록 권고중

\*\*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, 촬영일사장소 등을 특정사이트(www.privacy.go.kr)에 사전 고지

- (무음앱 위험성 안내) 촬영 무음앱 다운로드시 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앱 설명자료에 고지

⇒ 「개인영상정보 보호법」 제정(행안부, '18.6월) 및 앱 설명자료 고지(방통위, '17.12월)

- ※ 무음앱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고주파(15kHz 이상) 촬영앱의 스마트폰 탑재 및 탐지 앱 개발방안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, 중장기 검토

### ③ IP카메라\* 등 영상촬영기기 보안 강화

\*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(Internet Protocol) 카메라(1,402대)에 무단 접속(2,354회) 하여 불법 촬영 및 녹화영상 해킹,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

- (비밀번호 변경) 이용자에게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IP카메라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인식 제고 홍보
- (보안조치 강화) IP카메라 등 제조사에 단말기별 다른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조치 강화

⇒ 영상촬영기기 보안조치 강화(과기정통부, '17.10월)

### ④ 불법 영상촬영기기 수입 심사·검사 강화

- (수입통관) 카메라 관련 물품 중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수입 심사·검사 강화
- (국내유통) 초소형 카메라 수입업체 통관내역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 수입업체 집중 단속

⇒ 적발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(경찰청·관세청, 상시)

## 2. 불법영상물 유포·신고

### ①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·차단

#### <정 부>

-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즉시 영상물을 삭제·차단 하는 **FAST TRACK** 마련
- 피해자 요청시 불법영상물 선차단(자율규제) 조치후 긴급심의 실시 (현행 10.8일 → 2~3일)

⇒ 정보통신망법 개정(방통위, '17.12월) 및 긴급심의제도 활성화(방통위·방심위, '17.10월)

#### <사업자>

- (1단계) 자율심의 대상 항목(성매매, 도박 등)에 '개인성행위 영상'을 추가, 불법영상물의 **先차단·삭제** 등 **자율규제\*** 시행, 자율 규제 참여대상 업체 및 유형 점진적 확대

\* 네이버·카카오 등 39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, 이중 구글·페이스북·트위터 등 5개 해외사업자 참여중

- (2단계) 정보통신사업자가 **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시 삭제·접속차단 등 조치의무** 신설(마야행시 시장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

⇒ 자율규제(방통위, 상시) 및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(방통위, '17.12월)

### ②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 유포 통제

- (불법영상 정보 사업자와 공유) 방심위의 불법영상 정보(해시값, DNA값)를 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공유 확대

\* 경찰청에 신고된 피해자 기록물 정보,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록물 정보도 등록

- (위험성 경고 팝업창) 웹하드\*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·다운로드시, 불법영상 유포시 **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 신설**

\* 웹하드 53개 사업자 65개 사이트 운영('17. 8월말 기준)

- (해외사이트 실시간 감시) 한글지원 해외성인물 사이트의 최신 **불법영상 자동수집**, 유사성 검증 및 즉시 차단

⇒ 불법영상 정보 공유(방통위·방심위·여가부·경찰청, '17.10월) 및 관련업체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(방통위, '17.12월)

### ③ AI·빅데이터 등 활용, 불법영상물 탐지·차단기술 개발·적용

- (불법영상 차단기술 개발)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몰카 등 **불법영상 실시간 차단** 기술 개발
  - 이미지·오디오·동영상 유해성 분석·검출 요소기술 개발('18년), 몰카 등 음란물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('19년)

\* 미래영상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후속기술 개발 추진('20년~)

- (DNA 필터링 기술 적용) 불법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**원천적으로 차단**할 수 있는 **DNA 필터링 기술\*** 적용

\* 콘텐츠가 갖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 특성(DNA)을 비교차단하는 기술(저작권 분야 활용중)

⇒ 불법영상 차단기술 개발(과기정통부, '19.12월) 및 DNA 필터링 기술 적용(방통위 '19.1월)

### ④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고 활성화

- (긴급 신고 버튼 개설) 대화형 메신저, 게시판 구조 사이트(포털 등)를 통한 재유포 차단을 위해 **불법영상물 긴급 '신고' 버튼 개설**
  -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영상물 삭제·차단의무 부과(전기통신사업법 개정)후 신고시 불법영상물 정보가 방통위로 바로 통보되도록 조치
- (신고 요원 확대) 시민단체·여성단체 등 대상 불법영상 모니터링 교육후 신고 요원으로 활동

⇒ 관련업체 협의를 거쳐 조치(방통위, '17.12월) 및 신고요원 확대(여가부, '17.12월)

### 3. 디지털 성범죄 단속·수사

#### ①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피해 예방 조치

- (탐지장비 확충) 전문 탐지장비\*를 추가 보급하여 불법카메라 점검·단속 확대

\*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(전파탐지형 + 렌즈탐지형), '18년 288대 추가 보급(경찰청) 및 탐지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(과기정통부)

- 지자체·경찰관서 등이 참여하는 **합동점검반**을 편성, 정기 점검

⇒ 탐지장비 확충(경찰청, '18.1월) 및 정기 점검(경찰청, 상시)

- (공중화장실 등) 화장실, 목욕실, 탈의실 등에 **몰래카메라 설치 금지**(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하고, 지자체·경찰관서 합동으로 설치 여부 확인

-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**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**

⇒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행안부, '17.12월) 및 「개인영상보호법」 제정(행안부, '18.6월)

- (숙박시설) 숙박업자가 **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**(카메라등 이용 촬영죄)시 최대 **‘영업장 폐쇄’** 및 경찰청과 수사점검(안전업소 검사 확인증 교부)

⇒ 「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」 개정(복지부, '18.6월)

- (지하철 등) 지하철·철도역사·철도차량 내 화장실·수유실 등 **몰래 카메라 설치 취약개소(930개역) 일제점검(9.8~30)**

- **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**에 경찰·역무원·보안관 등을 활용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 강화

-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**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** 주기적 송출

⇒ 철도 역사 일제점검(~9.30) 및 몰카 예방 영상 방송(국토부, '17.10월)

## ② 국내외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

- 사이버수사관 및 누리캡스를 활용한 모니터링,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\* 단속활동 강화 및 해외 음란물 유포범죄 국제공조\*\* 강화

\* ① 사이트 운영자·광고업자 ② 웹하드·헤비업로더 ③ 음란 인터넷방송 업자

\*\* 美 국토안보수사청 등 국제공조를 통해 가입자정보·로그기록 등 자료 확보·활용

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 도출, CCTV확충 및 순찰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원
- 경찰청-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영상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정보공조 시스템\* 구축

\* 경찰→방심위 : 불법촬영물 삭제·차단 요청 / 방심위→경찰 : 불법유해물 수사의뢰

⇒ 단속·국제공조 강화(경찰청, 상시), 몰카 우범지역 도출(과기정통부·경찰청, '18.12월) 및 불법정보공조시스템 구축(경찰청·방심위, '18.6월)

## ③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

-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·운영, 신고·수사 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
  - 디지털 성범죄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제작, 일선기관에 배포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 우선적 시행

⇒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 지정 운영(경찰청, '17.10월)



## 4.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

### ① 촬영물 유포 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

#### ○ 처벌 요건 미비로 인한 법적 공백 보완

- (보복성 영상물 처벌조항 신설)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'징역형' 으로 처벌(벌금형 불가)
- (자신의 신체 촬영물 타인 유포)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
\* (현행) 촬영의 대상을 '다른 사람의 신체'로 한정하여 처벌 불가

#### ○ 영리목적 유포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

- (가중 처벌)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'징역형'으로 처벌\*(벌금형 불가)  
\* (현행) 7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(촬영물 유포) 촬영 동의시에도 비동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 
\* (현행) 동의(징역 3년, 벌금 500만원), 비동의(징역 5년 이하, 벌금 1천만원 이하)

⇒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(법무부, '17.12월)

### ② 경제적 이득 몰수·추징

-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, 목적 외 용도 이용,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·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

⇒ 「개인영상정보 보호법」 제정(행안부, '18.6월)

- (상습 몰카 촬영·유포사범 구속 수사 등) 몰래카메라 촬영·유포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된 **사건처리기준**(’15.12월)을 **철저히 준수**, 관련 사범에 엄정 대응

「카메라 촬영·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」 주요 내용	
사안이 중대하고, 죄질이 중하며,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	△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, △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, △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, 유포한 경우 등
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	△중요 신체부위 촬영하거나, △상습적으로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, △피해자 식별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 촬영 후 유포한 경우 등

- 불법 촬영에 사용된 **카메라**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, USB 등 **저장매체 압수·몰수**

⇒ **사건처리기준 엄정 적용 및 불법사용 카메라·저장매체 압수·몰수(법무부·경찰청, 즉시)**

### ③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**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** 시행

- (국가공무원)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**고의성 성폭력 범죄**는 **공직 배제**(파면, 해임)
- (교육공무원)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 합동 점검 등을 통해 **성범죄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직 배제**(파면, 해임)
- (군인)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**중징계 이상 처벌**(파면, 해임, 강등) 하고, 중징계자 **현역복무부적합 조치**

⇒ **몰래카메라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**(인사처, ’17.10월) 및 **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’ 징계유형 신설**(국방부, ’17.10월)

#### ④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철저한 단속 및 처벌

- 해외 사법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사이트 운영 금지 및 운영자의 신원 확인

\* 소라넷은 독일, 뉴질랜드, 네덜란드를 상대로 IP, 서버정보 제공 및 해당서버 폐쇄 조치를 요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당국에서 서버 폐쇄조치

- 운영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, 인터폴 수배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검거

⇒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(법무부, 상시)

### 5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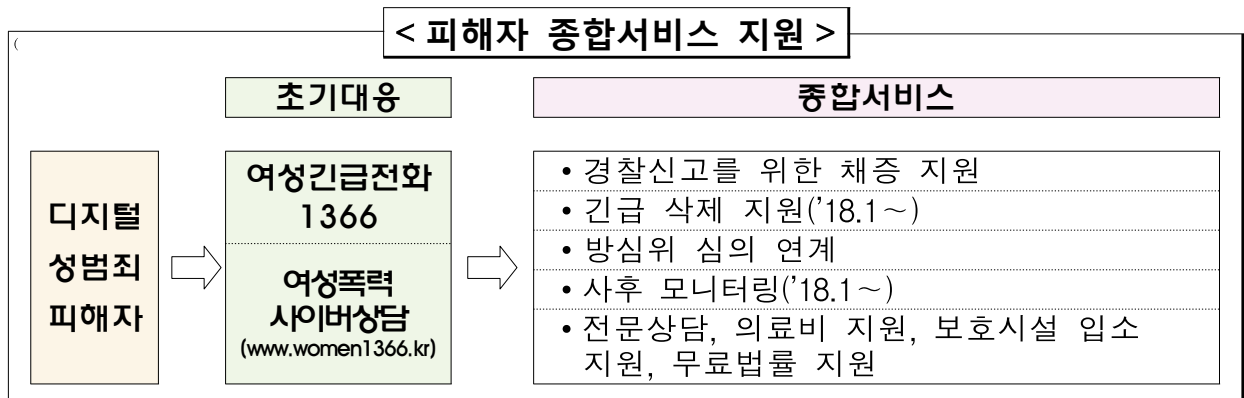
#### ①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

- (피해신고 센터 운영) “여성긴급전화 1366”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

\* 초기대응 상담 중요성·전문성 제고를 위해 1366 종사자 교육 및 업무매뉴얼 개발

- (종합서비스 제공) 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('18~), ②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, ③ 전문상담,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, 무료 법률서비스

- 중장기적으로 경찰청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증을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하는 방안 추진



⇒ 피해자가 신고 - 수사 - 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지원 (여가부 · 방심위 · 경찰청, '17.10월)

## ②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몰래카메라 피해자 지원

- 정신적 피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**입원기간**을 현행 1주일에서 **3~5일로 단축**
- 몰래카메라 범죄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**생계비 등 지원**
- 법률구조공단, 법률홈닥터를 통해 **무료법률서비스** 제공

⇒ **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(법무부, '17.12월)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지원(법무부, 즉시)**

## ③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

- (정부 先지급)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**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 선지급**
- (가해자 後부과)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**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 부과**

⇒ 「**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」 개정(여가부, '17.12월)

\* **유사입법례(가정폭력방지법)** :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·지자체가 폭력행위자 대신 치료보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, 국가·지자체가 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

## 6. 디지털 성범죄 예방·교육

### 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

- 중앙부처(여가부·법무부·방통위·경찰청 등), 관련업계 및 시민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
-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**분기별로 점검**하고 제도 개선방안 논의

⇒ **디지털 성폭력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(여가부 등, '17.10월~)**

## ②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

-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행위가 **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**이고, 촬영·유포자 신고후 검거시 **보상금 지급 대상**임을 홍보
- 성폭력 추방주간(11.25~12.1) 계기 여성단체 등과 협력, **디지털 성범죄 대국민 캠페인** 실시
  - 자신의 동의하에 촬영되는 영상물은 **언제든지 유포**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
  - **몰카 영상**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**'범죄 영상'**이라는 인식 제고
  - **'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, 유포하지 않기'** 등 3대 캠페인 실시
-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및 예방·대응방안을 **공익광고, 포털**을 통해 홍보  
⇒ **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·홍보(여가부·문체부·방통위, '17.10월~)**

## ③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**디지털 성범죄 교육** 추가

- 중앙정부·자치단체, 학교,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시 **카메라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행위 위험성·처벌 법규** 등 집중 교육  
⇒ **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(여가부·각급기관, '17.10월~)**

## ④ 청소년 대상 **디지털 성범죄 교육** 확대

- 청소년 대상, **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**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시 **성범죄로 처벌**(신상정보 공개 등)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 교육
-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**예방교육 자료** 개발 및 우수 교육자료 전국 학교에 보급  
⇒ **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(교육부, '17.10월~)**

## V

## 향후 추진계획

- 「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」 당정간 후속조치 추가협의(9.27)
  - 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’ 등 관련 법률(7개)의 조속한 통과
  - 국회 심의과정에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확충 등 예산 반영
- 「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」 분기별 점검·평가(국무조정실)
  -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시행
  -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및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
  - 현재 마련중인 젠더폭력 대책과 연계하여 동 대책 추진
  -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협업과제로 평가, 부처평가에 반영
- 「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(주관 : 여성가족부)」를 통해 대책 지속 보완(관계부처)

◆ 이번 「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」은 “디지털 성범죄 Zero, 국민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점”으로 추진